
새출발기금 제도개선(9.12 시행) 관련 주요 이슈 Q&A

2024. 9.

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

목 차

〈1〉 제도 일반

- 1.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사항 1
- 2. 새출발기금 협약가입 금융회사 현황 및 확인 방법 2

〈2〉 새출발기금 확대

- 1. 사업 영위기간 확대 요건과 제출 필요서류 3

〈3〉 부실·폐업자 원금감면을 우대

- 1. 원금감면을 우대 요건 및 지원 방안..... 4
- 2. 원금감면을 우대를 위한 신청 방법 5
- 3. 원금감면을 우대 신청시 제출 필요서류 6
- 4. 원금감면을 우대 적용 시기 7
- 5. 새출발기금 약정 채무자에 대한 소급지원 가능 여부 8
- 6. 금번 제도 시행 전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 9

〈4〉 지원대상 대출 확대

- 1. 새롭게 바뀐 신규대출 지원 기준 10
- 2. 새롭게 바뀐 대환대출 등 지원 기준..... 11
- 3.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정책보증대출 현황 및 기존 신청 채무자에 대한 소급지원 가능 여부..... 12

〈5〉 기타 사항

- 1.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 대한 효력 상실시 채무조정 지원 방안 및 신청 방법... 13
- 2.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(10.17 예정)으로 달라지는 사항..... 14

<1> 제도 일반

1.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으로 달라지는 사항은?

- 정부가 발표(7.3)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새출발기금 대상차주 확대 및 신청기간을 연장하고, 부실·폐업자에 대해 원금감면율을 우대합니다.
 - (대상차주 확대) 지원 대상 사업영위기간을 당초 '20.4월 ~ '23.11월에서 '20.4월 ~ '24.6월로 7개월 확대
 - (신청기간 연장) 새출발기금 신청기간을 당초 '22.10월 ~ '25.10월에서 '22.10월 ~ '26.12월로 15개월 연장
 - (부실폐업자 원금감면율 우대) 부실·폐업자가 취업·재창업 교육 이수시 무담보(신용·보증) 채무에 한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%p 우대
 - 추가로 기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신규대출, 대환대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지원 대상 대출에 포함합니다.
 - 부실우려차주*의 대출 중 채무조정 신청 당시로부터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% 이하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 지원합니다. 또한, 기존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도 신규대출로 포함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채무조정 지원이 가능합니다.
- * 부실차주는 그간에도 총 채무 30% 이하의 신규대출은 포함하여 채무조정 가능
- 새출발기금 정책발표일('22.8.29)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보증을 지원합니다.

2. 새출발기금 협약가입 금융회사 현황 및 확인 방법은?

- ☐ '24년 8월말 기준 새출발기금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은행, 카드사, 캐피탈사, 저축은행, 보험사, 보증기관, 수협, 산림조합, 미소금융재단, 상호금융회사(신협, 새마을금고, 지역농협) 등 약 2,700여개입니다.

* (출범 시) 960개 → ('22년말) 1,829개 → ('23년말) 2,340개 → ('24.8월) 2,667개

- ☐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상세 명세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<2> 새출발기금 확대

1. 사업 영위기간 확대 요건과 제출 필요서류는?

□ ‘20.4월 ~ ’24.6월 중 사업을 영위하거나 ‘20.4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·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○ 해당 기간 중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(폐업증명원)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에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,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□ 또한, ‘20.4월 ~ ’24.6월 중 사업*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점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새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
*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,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 등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불가

<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시 준비 필요사항 >

구 분	개인사업자	법인 소상공인
① 본인확인	휴대폰인증, 간편인증, 공동인증서 중 택1	공동인증서
② 재무조정 대상자격 확인	사업자등록번호, 주민등록번호	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, 소상공인 확인서* 발급사실(제출 불필요) * 중소벤처24(www.smes.go.kr) 및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발급
③ 제출 서류	1.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(또는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) (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(임대)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) 2. 예·적금 잔액현황 * 계좌통합관리서비스(www.payinfo.or.kr) 조회내역서 ※ 사업영위기간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(폐업증명원) 추가 제출	

<3> 부실·폐업자 원금감면율 우대

1.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 및 지원 방안은?

- ☐ **(우대 요건)** 새출발기금 신청일 현재 ①폐업상태인 ②부실채주로서 ③새출발기금이 지정하는 취업·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채무자는 원금감면율 우대(최대 10%p) 지원이 가능*합니다.

* 단, 이수증빙 제출이 필요하며, 채무조정 기간 중 1회만 추가감면 신청 가능

- ☐ **(지원 방안)** 우대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는 무담보(신용·보증)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감면율에 추가(최대 10%p)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※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90% 한도 내에서 원금감면율 우대가 가능합니다.

< 원금감면율 우대 대상 교육 프로그램 >

부실·폐업자가 취업 교육(국민취업지원제도 內, 고용부) 및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(희망리턴패키지 內, 중기부) 등을 이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금감면율 우대(최대 10%p)를 지원(7.3. '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)

교육 프로그램	이수 수준
■ 국민취업지원제도(고용노동부)	취업 또는 기간만료*
■ 희망리턴패키지(중소벤처기업부)	
재취업 지원 교육	기초교육 및 심화교육 이수
재창업 사업화 지원	지원 절차 완료
재창업 교육	이수

* 고용노동부 발급 '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' 상 확인 가능

2. 원금감면율 우대를 위한 신청 방법은?

- 부실·폐업자가 취업·재창업 교육 이수 등 원금감면율 우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원금감면 우대를 신청*할 수 있습니다.

* 채무조정 기간 중 **1회만 추가감면 신청** 가능

-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류 양식(추가 감면 신청서 등)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, 증빙서류(교육 이수증 등)와 함께 업로드* 해주시면 추후 심사를 거쳐 최종 원금감면율 결과를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.

* 온라인 플랫폼 상 **진행상태 확인하기** 클릭 후 **본인인증 완료** 시 제출 가능

-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오프라인 창구를 방문하시면 새출발기금 담당자가 신청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.

3. 원금감면율 우대 신청시 제출 필요서류는?

□ 취업·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부실·폐업자가 원금감면율 우대(최대 10%p)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 등에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○ 단, 제출한 서류가 검증 절차를 거쳐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기존 채무조정 약정이 효력상실될 수 있습니다.

< 취업·재창업 교육 이수자 추가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>

구 분	취업교육 이수	재창업교육 이수
① 공통서류 (필수제출)	1. 취업·재창업 교육 이수자 추가 감면 신청서 2.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 3. 폐업사실증명원 (신청서 및 동의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양식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업로드 필요)	
② 선택서류*	1. 국민취업제도(고용부) 참여확인서 (취업 또는 기간만료 상태) 2. 희망리턴패키지(중기부, 소진공) 內 재취업교육 이수증 (심화단계)	1. 희망리턴패키지(중기부, 소진공) 內 재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이수증** 2. 희망리턴패키지(중기부, 소진공) 內 재창업교육 이수증

* 참여 또는 이수한 모든 프로그램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

**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적서류 개발 중으로 완료('24년 10월) 전까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이수 이후 신규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제출

4. 원금감면율 우대 적용 시기는?

원금감면율 우대는 9.12일부터 시행되며, 제반심사 및 채권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됩니다.

□ 서류제출 완료 및 심사를 통과한 경우 ❶신규약정시점 또는 ❷약정변경시점에 우대 감면율이 적용 가능합니다.

❶ (미약정자) 새출발기금 신청완료 이후 채권인수절차가 진행중 이거나, 채권인수 후 아직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규약정 체결 시 우대 감면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❷ (약정체결자) 이미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신 경우, 기존 약정 담당자와 상담 및 서류 제출 완료 후 변경된 채무 조정안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(통상 7영업일 소요전망)

5. 새출발기금 약정 채무자에 대한 소급지원 가능 여부?

- ☐ 이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도 원금감면율 우대(최대 10%p)를 지원합니다.

※ 단, 원금감면율 우대 신청 시점 이미 완제된 채무조정은 지원 불가

- 기존 채무조정 약정 내용(분할상환 기간 등)을 유지하되, 추가 원금 감면에 따라 채무부담액 및 잔여 상환기간 동안의 분할상환금이 변경됩니다.
- 기존 채무조정을 연체 중인 경우에는 연체된 분할상환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6. 금번 제도 시행 전 교육 수료자에 대한 지원 가능 여부는?

- ☐ 금번 제도 시행('24.9.12.) 이전에 취업·재창업 교육프로그램을
既수료한 부실·폐업자는 교육 이수일 등이 '22.10월 이후*인 경우
원금감면을 우대(최대 10%p)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다만, 연간 단위로 진행되는 희망리턴패키지 “재창업 사업화 지원”은
'22년 이후 지원 사업에 참여 및 지원절차를 완료한 자

<4> 지원대상 대출 확대

1. 새롭게 바뀐 신규대출 지원 기준은?

-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% 이하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 새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 - 다만, 새출발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- 금번 제도 시행('24.9.12.) 전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부실우려차주가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신규대출이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%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초 제외되었던 신규대출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※ 제외된 신규대출에 대한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(1600-5500)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 신규대출 지원 기준 >

구 분	부실우려차주 (근시일 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)	부실차주 (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)
종전	■ 새출발기금 신청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모든 신규대출	■ 새출발기금 신청일 기준 6개월내 신규대출이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% 이하인 대상 차주의 대출
개선	■ 새출발기금 신청일 기준 6개월내 신규대출이 전체 원화채권 총액의 30% 이하인 대상 차주의 대출	

2. 새롭게 바뀐 대환대출 등 지원 기준은?

- ☐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채무자의 대환대출 등은 상환증명서 등 기존 대출의 상환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.
 - ☐ 또한, 금번 제도 시행('24.9.12.) 전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의 대환대출 등은 기존 대출의 상환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※ 대환대출에 대한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,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3. 지원대상으로 추가된 정책보증대출 현황 및 기존 신청 채무자에 대한 소급지원 가능 여부는?

□ 당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(2022.8.29.) 이후 발생한 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*, 브릿지 보증**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
* (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) 코로나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신용도 악화로 금융 애로를 겪은 중·저 신용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

** (브릿지보증)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이용 중 폐업한 자에 대해 기존 사업자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상품

□ 금번 제도 시행("24.9.12.) 이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운영 중인 모든 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, 브릿지 보증에 대해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○ 다만, 금번 제도 시행 전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채무자가 정상 상환 중인 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, 브릿지 보증에 대해 새출발기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< 정책보증대출 지원 내용 >

구 분	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, 브릿지 보증
종전	■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발표일(2022.8.29.)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 재단이 취급하는 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
개선	■ (지원대상 확대)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중·저신용자 특례보증 및 브릿지 보증 * 정상상환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제한

<5> 기타 사항

1.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에 대한 효력 상실시 채무조정 지원 방안 및 신청 방법은?

- ☐ 부실우려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채무조정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이 해당 채권을 매입하여 부실차주로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☐ 부실차주로서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을 통해 신청하시면 도덕적 해이 심사*를 거쳐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*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, 고액자산가 등은 채무조정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

< 차주 유형별 채무조정 지원 주요 내용 >

구 분	부실우려차주 (근시일 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)	부실차주 (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)
추심 중단	■ 채무조정 신청 즉시(익일)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,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·임의경매 중지	
분할 상환	■ (거치기간) 0~12개월(부동산담보대출은 0~36개월) ■ (분할상환기간) 1~10년(부동산담보대출은 1~20년)	
금리 감면	■ (연체 30일 이하) 기존약정금리 유지 * 9%초과분은 9%적용 ■ (연체 30일 초과) 단일금리로 조정	■ 이자, 연체이자 전액 감면 *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와 동일
원금 감면	■ 지원되지 않음	■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 (부채-자산)의 60~80% 조정 * 취약계층은 최대 90%

2.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(10.17 예정)으로 달라지는 사항은?

- 채무자의 부실무담보(신용·보증) 대출 중 일부 대출*이 금융회사가 매각 전 양도예정 통지가 의무화됨에 따라,

* 원금 3천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

- 금융회사의 양도예정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채권에 한해서만 기금의 매입절차 진행 및 채무조정이 가능*합니다.

* 채무자가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, 채무조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새출발기금 지원을 위해 신청자분들께서는 양도예정 통지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그 외 추가적인 사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(새출발기금.kr)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